

원천공제통지서(채무자용)

성명	생년월일
주소지	
원천공제기간	

통 지 내 용

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			원천공제의무자	
소득구분	의무상환액	원천공제 금액	사업자등록번호	상 호
근로소득	원	(매월 원)		
사업소득	원	(매월 원)		
연금소득	원	(매월 원)		
합 계	원	(매월 원)		
의무상환액 산출근거	① 자발적 상환액 차감 전 의무상환액	② 년 자발적 상환액	의무상환액 = Min[(①-②), 통지한도액*]	
	* 통지한도액 = 대출잔액 - 통지·고지된 의무상환액 미납액			

- 귀하는 년에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여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 18조에 따라 매년 소득의 변동에 연계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
 - 고용주인 원천공제의무자는 매월 분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며,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 20%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.
 - 귀하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과 귀하가 원천공제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, 귀하가 . . .까지 아래의 계좌번호로 원천공제금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을 통지하지 않습니다.
- ※ 귀하가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했으나 . . .까지 2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을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.
-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동되는 경우(퇴직 포함)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의 "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정보통신망"에 신고해야 하며, 인사이동 등 퇴직 없이 원천공제의무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.
 - 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거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의무상환액은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
 -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 · 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5%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·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세 무 서 장 직인

미리 납부할 경우 납부할 금액	납부할 계좌번호
전액 납부 시 (원)	
분할납부 시(1회차2회차) (원)	

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☎) 또는 국세상담센터(☎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